



해외 경쟁정책 동향

미국

FTC, 경쟁사안에 있어서 금전적 구제조치(Monetary Remedies)의 이용에 관한 policy statement 발표

부당이득의 박탈과 손해배상은 일부 사안에 있어서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경쟁사안-특히 Hart-Scott-Rodino 합병사전 신고법(Premerger Notification Act)(HSR법), FTC법 및 클레이튼법 위반사안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반환 및 손해배상 등과 같은 형평법상의 금전적 구제조치의 이용에 관한 전원일치의 policy statement를 발표했다. 부당이득의 박탈(disgorgement)이라 함은 「위반행위자로부터 그 부당한 이득을 박탈하는 동시에 장래 다른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적 구제조치이고, 손해배상(restitution)이라 함은 「위반행위의 피해자를 위반행위가 행해지지 않은 상태로 회복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statement에 의하면 이러한 금전적 구제조치를 구하는 결정은 사안별로 결정되지만, 「부당이득의 박탈과 손해배상은 일부의 경쟁사안에 있어서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FTC는 「계속해서 기본적으로는 보다 일반적이고 장래(작위·부작위)에 관한 구제조치에 의존할 것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부당이득의 박탈과 손해배상을 추구할 것이다.

FTC의 statement는 연방관보상의 고시(2001. 12. 19)에 대해 제출된 코멘트, 관련 판례 및 문헌, public forum에서 수집된 정보 및 FTC 자신의 경험의 검토를 근거로 책정된 것이다.

statement의 지적대로 FTC는 최근 2건의 사례에서 부당이득의 박탈을 구하고 이를 달성하였다. 2건의 사례로는 제약회사 Mylan Labs, Inc.에 의한 위법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사안(FTC v. Mylan Labs, Inc., No.1:98CV03114(TFH), D.D.C. Feb. 9, 2001)과 The Hearst Trust에 의한 HSR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안(FTC v. The Hearst Trust.,

No.1:01CV00734 (TJP), D.D.C. Nov. 9, 2001)이다.

FTC의 statement는 부당이득의 박탈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 고려되어야 할 3가지 요소를 특정하고, 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FTC는 통상의 경우 기초가 되는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만 금전적 구제조치를 구한다. 둘째로 구제에 관한 지불액 산정의 합리적인 기초가 없으면 안 된다. 셋째로 FTC는 소송과 형사절차 등 당해 사안에 있어서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조치를 근거로 금전적 구제조치를 구한다는 뜻을 고려한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의 현저한 양상(위반의 중대성, 악질성 등)은 「금전적 구제조치를 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준다.

이 policy statement에서는 이러한 요소 각각에 대해 보다 상세히 논하고 있으며, FTC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중복될 경우와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 피고에게 도를 넘는 다양한 지불에 대해서는 … 주의를 요한다」라는 점을 특별히 기재하고 있다.

FTC는 동 policy statement를 발

표하는 것의 승인 및 statement의 사본을 공문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 5-0으로 이를 결의했다. policy statement는 FTC의 웹사이트상의 아래의 주소에서 열람 가능하다.

<http://www.ftc.gov/os/2003/07/disgorgementfrn.htm>

2003. 7. 31. 미국 FTC 발표문
(월간 「공정취임」 2003. 9월호 발췌)

FTC의 새로운 위원에 Pamela Jones Harbour 여사가 취임

Pamela Jones Harbour 여사는 FTC의 위원에 취임했다.

Pamela Jones Harbour 여사는 금일 Timothy J. Muris 위원장에게 선사한 후 FTC의 위원에 취임했다. 부시 대통령은 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Harbour 여사를 2009년 9월 까지의 임기로 지명했다. 2003. 7. 23. 상원은 동 지명을 전원일치로 승인했다.

FTC는 불공정한 혹은 기만적인 관행 또는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금지하는 연방법률과 규칙을 집행하고 있다. FTC는 1914년에 설치되었으며, 5인의 위원이 있다.

Harbour 여사는 Kaye Scholer LLP로부터 FTC에 기담했다. Kaye Scholer에서는 반트러스트 사안을 취급하는 소송담당부서에서 파트너를 맡고 있었다. 그녀는 의뢰인에 대해 인터넷

넷 프라이버시(Internet Privacy), 전자상거래(e-commerce), 소비자보호,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쟁관계의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하고 있었다. Harbour 여사는 Kaye Scholer 근무 이전에는 뉴욕 주의 사법 부장관(New York State Deputy Attorney General)과 150인의 검사를 인솔하는 공공정책국의 국장을 맡았었다. 사법 장관 아래서 근무한 11년간 최고재판대기격구속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인 State Oil v. Khan에서 35개 주를 대표하여 미국 대법원에서 변론을 했다. 그녀는 또한 New York v. Reebok, States v. Keds, States v. Mitsubishi에서 많은 주를 성공적으로 대표하여 그 결과 수백만 달러의 전국적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화해금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그녀가 담당했던 것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반트러스트 사안으로는 New York v. May Department Store와 합병을 금지한 케이블TV 산업에 대한 4년간의 다수 주가 개입된 심사가 결국 동의판결로 끝난 States v. Primestar Partners가 있다.

Harbour 여사는 인디애나 법대에서 1984년에 법학사 학위를 받고 1981년에는 인디애나 음대에서 음악학사 학위(B.M.)를 받았다.

2003. 8. 4. 미 FTC 발표문
(월간 「공정취임」 2003. 9월호 발췌)

연방법무부, 통신위에 QWEST사의 장거리 전화서비스 허용 권고

연방법무부(이하 DOJ)는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에 대해 Qwest사가 신청한 애리조나주에서의 장거리 전화서비스 제공 신청을 허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DOJ는 Qwest가 서비스 경쟁을 위해 필요한 그의 시내망 시장을 대체적으로 개방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애리조나주 시내망 전화시장은 경쟁을 촉진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R. Hewitt Pate 독점금지국장장은 말했다. 그는 또한 “필수설비에 기반하여 경쟁사들은 사업용 및 주거용 시장 모두에 진입했으며, 이에 연방법무부에서는 더 이상 애리조나주에서는 Qwest에 의한 실질적 장애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DOJ는 1996년 연방통신법 제 271조에 의해 애리조나주에서 장거리 전화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Qwest에 대한 평가에서 친경쟁적이라고 분석했다. 통신법 제271조에 따른 최초의 신청은 지난 1997년 1월에 있었다. 만일 FCC가 Qwest의 신청과 SBC사가 현재 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 오하이오주 및 위스콘신주에서의 장거리 전화서비스 신청을 승인한다면, 애리조나주에서의 Qwest의 승인이 장거리 전화사업 승인의 마지막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한다.



AT&T사의 기업분할의 일환으로 시나 전화 사업을 하는 벨계 전화사업자(Bell Operating Companies; 이하 BOC)들은 처음에는 법원의 분할명령에 의해서 그리고 현재는 연방통신법에 의해 각기 자신의 지역에서 장거리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 당해 왔다.

통신법 제271조에 의해 Qwest와 같은 BOC는 특정 주에서 시내전화망을 개방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적 요건들을 충족했다고 FCC가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 지역에서 장거리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왔다. BOC들이 특정 주에서 장거리 전화서비스 사업권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지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서, FCC는 반드시 DOJ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DOJ가 분석한 경쟁조건 검토 결과 및 BOC들에게 장거리 전화사업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한 DOJ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해야' 한다.

Qwest는 지난 9월 4일 FCC에 대해 장거리 전화서비스 신청을 했으며, FCC는 연방통신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03. 10. 9. 연방법무부

FTC, 기만적인 웹사이트 운영자를 제소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는 국무부의 영주비자(Diversity Visa) 추첨과 관련하여, 자신들을 미국 연방정부의 산하단체인 것처럼 속이고 소비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이른바 그린 카드라고 알려진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추첨에 등록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속여 온 8개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자들을 제소했다. FTC의 따르면, 이들은 실제로 연방정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을 속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은 소비자들은 올해 그린카드 추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됐다"고 Howard Beales 소비자보호국장은 말했다. 그는 또한 "FTC는 연방정부의 산하 기관인 것처럼 행세해 온 이들 사업자에게 법집행을 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소를 제기하면서, FTC는 영구적인 금지명령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FTC의 요구에 대해 콜롬비아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일에 피고들에게 더 이상 허위표시를 하지 말 것과 함께 그들의 자산을 동결시켰다.

1990년 이민법에서는 영주비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미국으로의 이민율이 낮은 국가에서 출생한 자 중에서 고등학교 교육수준 정도의 자들이나 2년 이상 일정한 업종에 종사하거나 훈련을 받아 온 자들 5만명에게 영주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하이티, 인도, 자메이카, 멕시코,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한국, 영국과 영연방 및 베트남 출생자들은 그린카드 추첨에 참가할 수 없다.

국무부가 추첨을 통해 수백만의 지원자들 중 무작위로 약 9만명의 당첨자들을 뽑으면, 이들은 가까운 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할 자격이 부여된다. 그리고 당첨자들 중에서 약 45%는 최저 교육 정도나 업무경력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또는 필수적인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기타 부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들을 완벽하게 또는 제 때에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 등으로 탈락된다. 추첨이 행해진 해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 최종적으로 선발된 당첨자들은 영주비자를 발급 받게 된다.

영주비자의 추첨에 참가하기 위한 수수료는 없으며, 다만 사진 등을 포함한 생물학적 정보를 기재한 지원서를 국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피고들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최소한 8개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여행비자 서류 및 영주

비자 서류 서비스를 한다는 마케팅을 해왔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그린카드 신청란”을 클릭하도록 한 후 일정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으며, 이와 동시에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번호를 같이 기재하도록 했다. 1년치 수수료는 40달러에서 70달러였으며, 10년치 수수료는 150달러에서 250달러였다.

이에 대해 FTC는 피고들이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위반하여 기만적인 행위를 했으며, 연방정부의 산하기관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2003. 10. 9. 연방거래위원회

EU

유럽위원회, 반트러스트 심사 종결에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에 최후의 진술 기회 부여

유럽위원회는 반트러스트 심사종결에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마지막 진술 기회를 주었다. 유럽위원회는 소비자, 공급자 및 경쟁업자 등 폭넓은 분야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이 증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PC의 OS에서의 지배적지위를 지렛대로 하여 범용서비스에도 지배력을 넓히려 하고, 또한 Windows Media Player를 Windows의 OS

에 포함시키는 것이 진정한 경쟁을 약화시키고, 제품의 혁신을 억압하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감소시킨다는 지금까지의 유럽위원회의 인정을 확인함과 아울러 많은 면에서 보강하는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유럽위원회가 특정하고 있는 반트러스트법 위반을 배제하기 위해 과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일련의 구제조치에 대한 진술도 요구하고 있다. 이 복잡한 심사는 종결이 가까워지고 있으나 유럽위원회는 계속해서 주의 깊은 적정절차의 확보에 노력해 간다. 이 때문에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최종적인 이의고지서를 송부했다.

Mario Monti 경쟁정책담당위원은 「적절한 구제조치의 제시를 포함한 본 이의고지서는 위원회가 본 건에 대한 최종결정에 앞서 최종적인 진술을 제출할 기회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주는 것이다. 우리는 본 건의 최종적인 결과가 혁신과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수집된 증거

유럽위원회의 이의고지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최신의 광범위한 시장조사의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발표되었다. 동 시장조사에서 수집된 증거는 유럽위원회가 지금까지 2회 발표한 이의고지서 중에서 이미 언급되어진 상호운용성의 결여와 끼워팔기에 관한 주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

증거를 근거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유럽위원회의 잠정적인 결론이다.

상호운용성에 대해서는 유럽위원회가 입수한 증거에 의해 마이크로소프트가 PC의 OS에서 압도적인 지배적지위를 지렛대로 하여 기업내 네트워크 PC에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용서비스에도 지배력을 넓히려 하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경제지역전역 전체 업종에서 추출한 상당수의 중소 및 대기업과 접촉하여 그들이 구입시에 상호운용성을 고려요소로 할 것인가를,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술정보를 개시하지 않는 것이 구입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를 질문했다.

동 시장조사에 회답한 고객의 대다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interface 정보(이것은 경쟁 타사가 Windows의 OS 및 서버로 적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를 개시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 제품을 인위적으로 선호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행위는 진정한 경쟁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끼워팔기에 대해서는 유럽위원회는 매우 다양한 시장에 존재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접촉했다. 이들 기업은 유럽경제지역 및 미국내에 임의로 추출된 콘텐츠 소유자, 콘텐츠 공급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기업에게 자



기 산업의 특성에 관한 정보, 또한 어떠한 요소가 비즈니스상의 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수단이 되는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회답은 PC에 Windows의 Media Player 탑재를 필수적인 사항으로 하여 마이크로소프트에 유리하게 되도록 개발 인센티브를 인위적으로 왜곡시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Media Player를 Windows OS에 끼워 파는 것이 진정한 경쟁을 약화시키고 제품혁신을 압박하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감소시킨다는 유럽위원회 의 잠정적인 결론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제조치

유럽위원회는 구제조치로서 범용서비스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자가 Windows PC와 서버와의 충분한 상호운용성을 달성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정보개시의무를 중심으로 하는 조치를 잠정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범용서비스에 있어서 경쟁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동종 업종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인터페이스 정보의 개시 의무를 지게 된다.

끼워팔기에 관해서 유럽위원회는 2가지의 구제조치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Windows Media Player와 Windows의 끼워팔기를 그만두는 것으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Windows Media Player가 내재되

지 않은 Windows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끼워팔기에 의한 위반의 경우의 일반적인 구제조치이다. 또 한 가지는 「필수탑재」 조항으로, 이것에 의해 마이크로소프트는 Windows에 다른 경쟁 media player를 탑재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시 된다. 이 둘 두 가지 모두 소비자에 의한 media player에 관한 공정한 선택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2003. 8. 6. 유럽위원회 발표문
(월간 「공정취인」 2003. 9월호 발췌)

유럽위원회, 역외 항공사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협약 마련

운송위원회(The Transport Council)는 항공 부문에서 국가보조를 받은 제3국의 경쟁자로부터의 불공정한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의 법적인 공백을 메우기로 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 법에서는 국가보조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제3국 경쟁자들에 의한 불공정한 요금책정 문제까지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운송과 에너지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Loyola de Palacio 유럽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대한 만장일치의 동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합의는 우리 항공사들이 장래에 경쟁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 필요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새로운 규제안은 불

공정행위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새로운 법안이 채택된다면 법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004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의 거래에서와는 달리 항공 서비스의 거래에 있어서, 유럽연합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양자간 항공운송 협약에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다자간 협약에서도 이를 규율하기 위한 조항은 없다. 이에 반해 이번에 체결된 협약은 명확한 규제조항을 포함시킴으로서 이러한 법적인 공백을 없애고, 향후 유럽연합이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한 단계 발전했다고 유럽위원회측은 평가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보조를 통해 이익을 얻는 제3국의 항공사에게 일정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과금은 당해 항공사에 대해 주어진 보조금에 기초하여 부과되는데, 유럽연합 항공사가 입은 손해액을 그 한도로 한다. 만일 제3국 항공사가 그 나라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 정부가 보조한 비상업적 이익에 의해 발생된 불공정한 요금을 상쇄하는 정도로 부과금이 부과된다. 유럽연합에 속한

항공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원고가 주장하면 사건처리절차는 개시된다.

2003. 10. 9. 유럽위원회

유럽위원회, 폭약 및 추진연료 분야에서의 조인트벤처 승인

유럽위원회는 프랑스의 SNPE사, 스웨덴의 SAAB사와 핀란드의 Patria사가 민수용 및 군사용 폭약 및 추진연료 부문에서의 조인트벤처를 신고함에 따라 기업결합규칙에 의거하여 이를 승인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 역내에 대규모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심각한 경쟁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SNPE는 자회사인 SME사를 통해 폭약 및 연료물질 뿐만 아니라 니트로 셀룰로오스와 같은 화학물질의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폭약 및 추진연료 등을 생산하는 Nexplo사는 SAAB와 Patria에 의해 공동 지배되고 있다. 한편 SAAB는 군사용 및 상업용 항공기, 미사일 및 국방용 전자기기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Patria는 항공우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방위산업체이다.

조인트 벤처로 설립된 EURENCO사는 SME와 Nexplo의 폭약 및 연료 부문에서의 사업부문을 통합한 것이다. 민수용 시장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조사는 소형 폭약장치 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비록 이번 기업결합은

로 이 시장에서 수평적으로 중복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EURENCO는 Nobel Sport, UEE, Nitrokemia 및 Explosia와 같은 유럽 역내의 많은 추진연료 제조업체들과 여전히 경쟁관계에 있을 것으로 유럽위원회는 평가했다. 민수용 폭약과 관련해서는 조인트벤처사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몇몇 강력한 경쟁사들이 시장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군사용 제품과 관련해서는 신고된 조인트벤처가 군사용 제품의 생산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국방부의 선택을 바꿀만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2003. 10. 3. 유럽위원회

유럽위원회, 담배제조업자간 주식취득 허용

유럽위원회는 네덜란드 담배회사인 Philip Morris사가 담배제조 및 유통 사업을 하는 그리스의 Papastratos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결과 그리스 시장에서 경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Philip Morris는 Altria 그룹의 계열사로서, Marlboro, L & M 및 Philip Morris 등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사용하여 담배제조 및 판매사업을 하는 세계적인 회사이다. 그리스의

Papastratos는 주로 그리스와 루마니아에서 담배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Assos와 President 등의 유명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두 회사의 과거 지속적인 관계에 따른 결과이다. Papastratos는 이미 수년 전부터 그리스 시장에서 Marlboro 브랜드를 포함하여 기타 Philip Morris 브랜드를 사용하여 연초 제조 및 유통사업을 해왔다.

한편 Philip Morris는 그리스 담배 시장에서 시장선도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것이지만, Philip Morris의 브랜드와 Papastratos의 브랜드는 동일한 가격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경쟁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했다.

현재 그리스 담배시장은 매우 경쟁적이며 다양한 세계적인 경쟁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미칠 영향에 대해 담배 제조 단계, 유통단계 및 도매단계에서 각각 검토를 벌였으나 경쟁상의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번 기업결합 조사는 유럽연합의 기업결합규칙에 의거하여 순수하게 경쟁상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2003. 10. 3. 유럽위원회

유럽위원회, 제지판매사업 부문에 대한 기업결합 승인

유럽위원회는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PaperlinX Ltd사가 단독으로 유럽의 선도적인 제지판매사인 네덜란드의 Buhrmann N.V.사의 제지 판매 사업부문을 취득하는 것을 승인했다. 제지판매 시장에서 이 회사들의 결합시장점유율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적인 효과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시장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이 결합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증가될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 증가된 시장점유율이 시장지배력을 형성·강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국가의 소비자들은 여전히 다양한 대규모 및 중소기업의 제지판매사업자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영국과 아일랜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 경쟁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uhrmann과 PaperlinX는 모두 그래픽용 제지의 유통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Buhrmann과는 달리 PaperlinX는 제지생산도 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한 제지 중 소량만을 호주에서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PaperlinX의 판매사업은 유럽 이외의 지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Buhrmann의 영업부문은 제지를 주로 유럽 내에 유통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들 회사의 판매활동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만 중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번 기

업결합이 유럽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지었다.

2003. 10. 13. 유럽위원회

독일

경쟁법상 적용제외에 관해 검토

법학 교수 및 경제학 교수, 뒤셀도르프 고등법원과 연방대법원의 공정거래전담부 판사들은 “경쟁법상 적용제외”라는 주제로 지난 9월 23일 연방카르텔청이 위치하고 있는 본에서 경쟁법 작업반 활동을 벌였다.

올해 이러한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오는 2004년 5월부터 경쟁법 집행에 관한 새로운 유럽 규제안이 발효되며, 이것이 제7차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의 일부로 편입되는 데에 따른 것이다. 작업반 활동을 위해 연방카르텔청에서 작성한 자료에서는 환경/폐기물 관리, 금융 및 보험 산업, 저작권 단체, 스포츠 중계권, 농업, 수산업 및 보건 분야 등을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작업반에서는 미디어 사업자들에 대한 기업결합규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작업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경쟁법 집행에 관한 새로운 유럽 규제체계가 독일 경쟁법상 적용제외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시킬 것이라는 데

에 의견을 같이 했다. 2004년 5월 1일부터 회원국간의 거래에 영향을 끼치는 협정 등에는 유럽 경쟁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동시에 유럽 경쟁법이 회원국의 경쟁법에 우선하게 됨에 따라, 국내의 적용제외 영역은 국내 시장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몇몇 사건들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의 어떠한 적용제외 부문이 향후 유럽 차원에서의 적용제외에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는 별도로, 적용제외 영역에 대한 실질적인 정당성도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자들 대부분은 적용제외 영역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는 그 부문에 특유한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쟁법 작업반은 또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디어 합병 통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연방카르텔청장은 적용제외 문제와 관련하여 “입법자는 제7차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적용제외 영역을 축소하고 새로운 적용제외 부문이 인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03. 9. 30. 연방카르텔청

연방카르텔청,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대해 벌금 부과

연방카르텔청은 자신들과 거래하는

회사들의 가격책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Swissphone Telecommunications GmbH(이하 Swissphone)와 Ansmann Energy GmbH(이하 Ansmann Energy)에 대해 각각 1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호출기 장비 제조업체로 유명한 Swissphone은 2001년 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자신의 거래처들에게 자신이 추천한 최저판매가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인도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지키는 거래처들에게 Swissphone은 추가적인 할인을 해 주었다. 이 추가적 할인을 받기 위해 거래처들은 Swissphone에게 최종소비자(대부분이 공공기관)가 자신에게 주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했다. 이러한 할인제도에 기인한 거래처들에 대한 경제적 압력은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가격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2002년 7월부터 2003년 5월까지 건전지 및 충전지 제조사로 유명한 Ansmann Energy는 Ebay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의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려고 노력했다. 인터넷 경매를 통해 결정되는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저가격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회사는 몇몇 거래처들에 대해서는 제품 인도를 하지 않겠다고 위협하여 결국은 인터넷을 통해 Ansmann

Energy의 제품을 경매하는 18개 이상의 거래처들과 최저가격을 유지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카르텔청은 “가격은 반드시 경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거래처들은 자신들의 상품에 대해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터넷 경매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일 제조업자가 할인이나 제품을 더 이상 납품하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통해 자유로운 가격결정을 방해하는 것은 경쟁법 위반이다. 거래처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라고 하는 직접적인 구속을 하는 것도 금지되지만, 거래처들이 권장가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보너스, 할인 및 광고 지원 등을 하겠다고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2003. 9. 23. 연방카르텔청

연방카르텔청, EAM Energie사의 주식취득을 금지

연방카르텔청은 E.ON 그룹의 계열사인 EAM Energie AG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공공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Eschwege GmbH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허용하는 경우 전기 및 가스 판매 시장에서 E.ON 그룹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E.ON 그룹의 지방자

치단체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련의 주식취득 계획 중 첫 번째 사례에서 내려진 점이라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연방카르텔청은 앞으로 E.ON 그룹의 주식취득 계획에 속하는 각 사건마다 경쟁제한성 판단을 해야 한다.

연방카르텔청은 “연방카르텔청은 시장이 개방적으로 유지됨으로써 장래에도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아 E.ON 그룹의 공공사업 참가는 향후 시장을 봉쇄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2003. 9. 23. 연방카르텔청

일본

치바시와 치바시 도시정비공사 발주하는 공사 입찰참가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8일 치바시 및 재단법인 치바시 도시정비공사가 발주하는 토목공사 및 도장공사 입찰에 참가한 81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명령했다.

먼저,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伊藤工務店 등 117사(이하 118사), 山岡建設株式會社(이하 산강건설), 주식회사 保竹工務店(이하 보죽공무점), 東康建設株式會社(이하 동



강건설) 및 주식회사 政正工務所(이하 정정공무소)의 122사(이하 122사)는 1998년 10월 4일 이래, 치바시 등이 발주한 일정규모 이상의 토목공사에 있어서 수주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치바시 등으로부터 지명경쟁입찰 또는 희망형 지명경쟁입찰 참가의 지명을 받은 경우에 수주희망자가 1사인 때에는 그 자를 수주예정자로 결정하고 수주희망자가 복수인 때에는 공사 장소 및 과거 수주공사와의 관련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주희망자들이 의논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치바시 등이 발주한 토목공사란 치바시 및 치바시 도시정비공사가 치바시 내에 본점 또는 주된 영업점을 두고 있는 사업자들만을 지명하여 지명경쟁입찰이나 희망형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해 토목공사로서 발주하는 설계금액이 5천만 엔 이상 3억 엔 미만의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수주해야 할 가격은 미리 정해진 수주예정자가 정하고 그 이외의 사업자들은 수주예정자가 정한 그 가격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고, 필요에 따라 치바현 건설업센터에 모여서 회합을 가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122사는 치바시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토목공사를 수주하고 있었다.

산강건설은 2001년 4월 30일 무렵, 보죽공무점은 같은 해 8월 31일 이후 치바시 등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와 관련된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동강건설도 작년 9월 4일부터 건설업관련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정정공무소는 작년 10월 31일 치바지방법원에서 파산결정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 11월 13일에 조사에 착수했는데, 118사, 동강건설 및 정정공무소는 공정위의 조사 착수 이후에는 사업자들간의 입찰담합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

한편 도장공사와 관련해서도, 주식회사 小棚組 외 96사, 동강건설, 보죽공무점 및 정정공무소 등 100사는 1998년 4월 1일 이래 치바시 등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액 이상의 도장공사에서 수주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합 등을 통해 수주예정자를 미리 결정하였다. 또한 수주가격도 수주예정자가 책정한 가격으로 정해 질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들이 협력한 사실도 있음이 드러났다.

이처럼 치바시 등에서 발주한 토목공사 및 도장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들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그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부당한 거래제한이라고 보아서, 토목공사 입찰사업자 122사 중 73사에 대해서는 총 9억134만 엔, 도장공사 입찰사업자 100사 중 57사에 대해서는 총 1억 8335만 엔

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2003. 10. 1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영화배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권고

공정위는 20세기폭스재팬사(이하 폭스재팬)에 대한 심사 결과 그 행위가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권고조치했다. 폭스재팬사는 20세기폭스인터내셔널사로부터 배급받은 영상물을 일본 내의 상영업자에게 재배급하는 과정에서 '상영계약'이라는 이름의 기본계약과 '상영계약부속서'라는 부속계약에 근거하여 상영업자가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하는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고 입장료 할인 실시 여부를 정하는 등 상영업자의 입장료의 결정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취소하고 장래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명하는 동시에, 폭스재팬사와 상영업자간의 계약에 사용되는 계약서상에서 입장료의 제한조항을 삭제할 것과 향후 그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상영업자와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를 했다.

폭스재팬사는 10월 23일까지 권고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심판절차가 개시된다.

2003. 10. 8. 공정거래위원회